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1010005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1. 3. 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09

www.popeyes.com

POPEYES LOUISIANA KITCHEN

정 보 공 개 서

PLK APAC Pte. Ltd.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PLK APAC Pte. Ltd.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8 Cross Street, Manulife Tower, #28-01 Singapore 048424

대표 전화번호 (65) 6511-3700

대표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popeyes.com

가맹사업 담당자 이메일: franchising@popeyes.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영업표지	본사 주소			
PLK APAC Pte. Ltd.	파파이스루이지애 나키친	8 Cross Street, Manulife Tower, #28-01 Singapore 04842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0월 13일	Rafael Odorizzi	(65) 6511-3700	해당사항 없음
	법인 등록번호	201729509D	사업자 등록번호		201729509D

당사는 대한민국에 대표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기업명	상호	본사 주소			
계열회사	BK ASIAPAC, Pte. Ltd.	Burger King	8 Cross Street, Manulife Tower, #28-01 Singapore 048424			
		설립일	사업자 등록 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06년 4월 7일	해당사항 없음	Rohan Kaul, Legal Counsel	(65) 6511-3700	-
		설립 등록번호	200605069R	사업자 등록번호	200605069R	
관계	기업명	상호	본사 주소			
계열회사	Tim Hortons Asia Pacific Pte. Ltd.	Tim Hortons	8 Cross Street, Manulife Tower, #28-01 Singapore 048424			
		설립일	사업자 등록 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2020년 3월 30일	-	Rohan Kaul, Legal Counsel	(65) 6511-3700	
		설립 등록번호	202010181N	사업자 등록번호	202010181N	
관계	기업명	상호	본사 주소			
계열회사	Firehouse Subs APAC	Firehouse Subs	8 Cross Street, Manulife Tower, #28-01 Singapore 048424			
		설립일	사업자 등록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Pte. Ltd.		일		
		2022년 8월 16일	-	Rohan Kaul, Legal Counsel	(65) 6511-3700
		설립 등록번호	202228706K	사업자 등록번호	202228706K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0월 13일에 싱가포르에서 면제사회사로서 설립되었습니다.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PLK Inc.”)는 2018년 1월 1일자로 당사에게 모든 지식재산권(표장, 도메인명, 특허, 발명 및 한국은 포함하는 기타 APAC지역 내 PLK Inc.의 무형자산을 포함함)을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PLK Inc.는 2018년 1월 1일자로 한국을 포함하는 APAC지역 내 모든 가맹계약서에 따른 자사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당사에 양도하였습니다.

거래 내용	기업명	브랜드명	거래일	주소	대표자
양도 및 이전 (위 내용 참조)	PLK Inc.	Popeyes Louisiana Kitchen	2018. 1. 1.	400 Perimeter Center Terrace, NE, North Terraces, Suite 1000, Atlanta, GA, USA	Jill Granat, Secretary and General Counsel
다른 기업이 PLK Inc.를 인수함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Inc.	Burger King Tim Hortons	2017. 3. 27.	226 Wyecroft Road, Oakville, Ontario, L6K 3X7, Canada	Jill Granat, Secretary and General Counsel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당사는 “Popeyes” 및 “Popeyes Louisiana Kitchen”의 상호 아래 식당을 운영하고, 당사가 귀하의 식당 운영에 지정할 당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허여합니다. 본 정보공개서에서 당사는 Popeyes Louisiana Kitchen 식당을 “식당” 또는 “Popeyes 식당”이라고 칭합니다. 당사는 상표라 함에 있어 귀하의 식당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및 로고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반드시 당사의 상표에 대한 일체의 침해나 도전에 대하여 당사에 즉각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당사가 일체의 행정 절차 또는 법적 소송을 통제할 것이며 일체의 의심되는 침해자를 추적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사가 상표와 관련하여 변호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당사의 변호사가 변호나 처벌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스터 Master Franchise and Development Agreement (“MFDA”) 및/또는 Company Franchise Agreement (“CFA”. 이하 CFA와 MFDA를 총칭하여 “가맹계약”) 준수하지 않는 귀하의 상표 사용에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사는 귀하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불한 비용을 환급할 것입니다(귀사 직원의 급여는 귀하가 여전히 부담해야 함). 그 밖에 당사는 가맹계약서나 일체의 다른 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귀하에게 허여된 권한이나 상표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의 소송에서 변호할 책임을 지니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귀하를 위해 변호하는 것은 당사의 이익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소송의 결과로, 특정 상표의 사용을 변경 또는 중단하거나, 달리 Popeyes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Popeyes 시스템 및 식당을 식별하는 데 있어 다른 상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이를 요청하는 당사의 통지를 받는 대로 즉각, 이전의 표식 대신 새 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당사의 2021, 2022, 2023년도 재무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재무상황은 하단에 첨부된 [별첨 1] 재무제표와 Note를 확인하시고, 특히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달러)

연도	자산 총계 (Total Asset)	부채 총계 (Total	자본 총계 (Total Equity)	매출액 (Revenues)	영업이익 ¹ (Operation	당기순이익 ² (Net Income)
----	------------------------	-----------------	-------------------------	-------------------	---------------------------------	------------------------------------

¹ 영업이익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으므로, 매출액(Revenue)에서 Employee benefits expense와 Loss allowance for impairment of trade receivables (판매비와 관리비에 준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이익란에 기재합니다.

² Profit/(Loss) for the financial year/period, representing total comprehensive income for the financial year/period

		Liabilities)			Profit (Loss))	
2021	36,449,708	78,020,236	(41,570,528)	2,704,855	(59,163,288)	(59,073,828)
2022	39,585,356	85,691,159	(46,105,803)	5,221,698	(4,937,189)	(4,758,614)
2023	43,528,297	91,405,218	(47,876,921)	6,117,319	(866,003)	(2,242,558)

2021, 2022, 2023 재무제표 (별첨 1에 국문본 첨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위 1)항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업무기간	업무내용	담당
Rafael Odorizzi	Regional President, APAC PLK, BK, TH	2022 - 현재	Rafael Odorizzi는 RBI(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의 아태지역 회장으로 지역 내 RBI 브랜드를 관리합니다(버거킹, 파파이스와 Tim Hortons). Rafael Odorizzi은 과거 EMEA 지역에서 버거킹의 지역 부사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Rafael Odorizzi은 2014년부터 RBI와 함께 BK EMEA 노사부문 총괄매니저, EMEA 운영본부장, 마이애미의 중남미 운영 및 품질보증 담당이사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전략컨설팅 회사인 Accenture에서 근무하였고 미국 에반스톤에 위치한 Kellogg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수료했습니다.	관리자
Gordon Tam	Head of Finance and Development, APAC	2018-현재	Gordon Tam은 2018년부터 가맹본부에 재직하였고, 현재는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APAC) 재무 및 개발 담당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Nicklaus Tang은 PLK APAC PTE. LTD.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ordon은 현재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Burger King의 북아태평양(중국,한국, 일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Gordon은 시카고 대학에서 MBA,를 수료하고 토론토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금융 및 개발
Rafael Serer	General Manager, PLK APAC	2018-현재	Rafael Serer는 2018년부터 가맹본부에 재직하였고, 현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Popeyes 브랜드의 총괄매니저 (General Manage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Rafael은 Popeyes 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과, 버거킹 중앙아메리카와 캐피비안 지역 총괄 매니저,	일반적인 사업활동

			EDEA 지역(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디렉터를 역임했습니다. RBI에 입사하기 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2년간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였습니다.	
--	--	--	---	--

7. 최근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 수(명)
2023. 12. 31.	4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기업명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회사	Burger King Company LLC	가맹사업 경영	1984년-현재	Burger King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상표	현황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소유자 (등록신청자)	분류	만료일
LOVE THAT CHICKEN	등록	1536989	05/18/2020	1536989	05/18/2020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43	05/18/2030
POPEYES	등록	87/1992	0//11/1992	41-0022165-000	11/11/1993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43	11/11/2033
POPEYES	등록	40-2013-0052915	08/06/2013	40-1042741-000	06/13/2014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29	06/13/2024
POPEYES	등록	1538993	05/13/2020	1538993	05/13/2020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30	05/13/2030
POPEYES 뽕 빠 이	등록	11846-1982	10/27/1982	40-0094472-000	09/08/1983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29	09/08/2033
POPEYES LOUISIANA KITCHEN	등록	1538458	05/28/2020	1538458	05/28/2020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43	05/28/2030
POPEYES	등록	1544427	05/15/2020	1544427	05/15/2020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29, 30, 43	05/15/2030
POPEYES 뽕 빠 이 스	등록	790-1983	03/27/1983	41-0004581-000	09/07/1984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43	09/07/2024
	등록	1540200	05/28/2020	1540200	05/28/2020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43	05/28/2030

	등록	1539177	05/15/2020	1539177	05/15/2020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29, 30, 43	05/15/203 0
---	----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당사는 2017년 10월 13일에 싱가포르에서 면제사회사로서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PLK Inc. 는 당사에게 모든 지식재산권(표장, 도메인명, 특허, 발명 및 한국을 포함하는 APAC지역 내 기타 PLK Inc.의 무형자산을 포함함)을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자로 PLK Inc.는 한국을 포함하는 APAC지역 내 모든 가맹계약서에 따른 자사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당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을 포함하는 APAC 지역에서 기업명 및 “Popeyes” (관련 상표 및 서비스마크 포함)라는 명칭 하에 사업을 운영합니다.

PLK Inc.는 미네소타주 법인으로 1992년 7월 2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7일 회사명이 America's Favorite Chicken Company에서 AFC Enterprises, Inc.로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7일에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정보공개서에서 가맹본부는 PLK APAC Pte. Ltd. 식당들로서 "식당(들)" 또는 "Popeyes 식당(들)"을 나타냅니다. 가맹사업은 1992. 11. 5. 시작되었으며, 가맹본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Popeyes 식당(들)을 가맹하여 왔습니다.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가맹본부의 기업명)	상표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Popeyes Chicken & Biscuits (A. Copeland Enterpris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Alvin C. Copeland, President	1976. 2 - 1981. 7	1333 S. Clearview Parkway, Jefferson, Louisiana 70121
Popeyes Chicken & Biscuits (Popeyes Famous Fried Chicken,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Alvin C. Copeland, President	1981. 7 - 1984. 2	1333 S. Clearview Parkway, Jefferson, Louisiana 70121

Popeyes Chicken & Biscuits (Popeyes Famous Fried Chicken and Biscuit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Alvin C. Copeland, President	1984. 2 – 1985. 4	1333 S. Clearview Parkway, Jefferson, Louisiana 70121
Popeyes Chicken & Biscuits (Popey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Jim Flynn, President	1985. 4 – 1989. 3	1333 S. Clearview Parkway, Jefferson, Louisiana 70121
Popeyes Chicken & Biscuits (Biscuit Investment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Jim Flynn, President	1989. 3 – 1989. 9	1333 S. Clearview Parkway, Jefferson, Louisiana 70121
Popeyes Chicken & Biscuits (Al Copeland Enterpris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Alvin C. Copeland, President	1989. 9 – 1992. 11	1333 S. Clearview Parkway, Jefferson, Louisiana 70121
Popeyes Chicken & Biscuits (America's Favorite Chicken Company)	Popeyes Chicken & Biscuits	Frank J. Belatti, Chief Executive Officer	1992. 11 – 1996. 9	Six Concourse Parkway, Suite 1700, Atlanta, Georgia 30309
Popeyes Chicken & Biscuits (AFC Enterpris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Frank J. Belatti, Chief Executive Officer	1996. 9 – 2005. 8	Six Concourse Parkway, Suite 1700, Atlanta, Georgia 30309
Popeyes Chicken & Biscuits (AFC Enterpris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Kenneth Keymer, Chief Executive Officer	2005. 8 – 2007. 3	5555 Glenridge Connector, NE, Suite 300, Atlanta, Georgia 30342
Popeyes Chicken & Biscuits (AFC Enterpris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Frederick Beilstein,, Interim Chief Executive Officer	2007. 3 – 2007. 10	5555 Glenridge Connector, NE, Suite 300, Atlanta, Georgia 30342
Popeyes Chicken & Biscuits (AFC Enterpris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Cheryl A. Bachelder, Chief Executive Officer	2007. 11 – 2009. 3.	5555 Glenridge Connector, NE, Suite 300, Atlanta, Georgia 30342

Popeyes Chicken & Biscuits/ Popeyes Louisiana Kitchen (AFC Enterprises,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Cheryl A. Bachelder, Chief Executive Officer	2009. 3 - 2014. 4.	400 Perimeter Center Terrace, NE; North Terrace, Suite 1000; Atlanta, GA 30346 (5555 Glenridge Connector, NE, Suite 300, Atlanta, Georgia 30342에서 2011. 11. 14.자로 변경)
Popeyes Chicken & Biscuits/ Popeyes Louisiana Kitchen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Popeyes Chicken & Biscuits / Popeyes Louisiana Kitchen	Andrew G. Skehan, Chief Operating Officer, International Divisions	2014. 4. - 2015.3.	400 Perimeter Center Terrace, NE; North Terrace, Suite 1000; Atlanta, GA 30346
Popeyes Louisiana Kitchen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Popeyes Louisiana Kitchen	Andrew G. Skehan, President, International Division	2015.3- 2017.3.	400 Perimeter Center Terrace, NE; North Terrace, Suite 1000; Atlanta, GA 30346
Popeyes Louisiana Kitchen (Popeyes Louisiana Kitchen, Inc.)	Popeyes Louisiana Kitchen	Ronald K. Whitt, President, International	2017.3.- 2018. 1.	400 Perimeter Center Terrace, NE; North Terrace, Suite 1000; Atlanta, GA 30346
Popeyes (PLK APAC, Pte. Ltd.)	Popeyes	Naheem Khan, President, International	2018. 1-2019. 12.	5 Shenton Way, #14-01/03 UIC Building, Singapore 068808
Popeyes (PLK APAC, Pte. Ltd.)	Popeyes	Sami Siddiqui President, APAC	2019.12.- 2020.10.	5 Shenton Way, #14-01/03 UIC Building, Singapore 068808

Popeyes (PLK APAC, Pte. Ltd.)	Popeyes	Ekrem Ozer President, APAC	2021.2. – 2022.3.	5 Shenton Way, #14-01/03 UIC Building, Singapore 068808
Popeyes (PLK APAC, Pte. Ltd.)	Popeyes	Rafael Odorizzi President, APAC	2022 – 현재	8 Cross Street, Manulife Tower, Singapore 048424

*Popeyes 시스템 및 Popeyes 식당(들)은 합병, 인수, 재조직으로 인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76년 이후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른 관련 기업명을 가맹본부의 상호 다음에 괄호로 추가하였습니다.

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Popeyes Louisiana Kitchen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패스트푸드	프라이드 치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사업자 및 직영점의 총 수

A. 국내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사업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사업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사업자수	직영점수
전체	1	1	0	2	2	0	12	12	0
서울	0	0	0	2	2	0	7	7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1	1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	1	0	1	1	0	4	4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B. 해외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사업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사업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사업자수	직영점수
전체	72	72	0	110	110	0	199	199	0
중국	0	0	0	0	0	0	10	10	0
홍콩	1	1	0	1	1	0	2	2	0
인도	0	0	0	12	12	0	32	32	0
인도네시아	0	0	0	3	3	0	25	25	0
필리핀	26	26	0	42	42	0	58	58	0
싱가포르	9	9	0	9	9	0	14	14	0
스리랑카	3	3	0	4	4	0	5	5	0
베트남	33	33	0	39	39	0	53	53	0

5. 최근 3년간 가맹점을 개점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거나 가맹계약이 만료된 각 가맹점사업자 수

A. 국내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2	0	0	0	2
2023	2	10	0	0	0	12

B. 해외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2	20	0	0	0	72
2022	72	38	0	0	0	110
2023	110	89	0	0	0	199

6. 최근 3년간 본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A. 국내

구분	기업명	영업표지	정보공개 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계열회사	Burger King	Burger King	-	레스토랑 사업	440/0	472/0	485/0
계열회사	Tim Hortons	Tim Hortons	-	레스토랑 사업	0/0	0/0	2/0

B. 해외

구분	기업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가맹본부 및 그 계열사	Popeyes	Popeyes	-	레스토랑 사업	3,664/41	4,048/ 41	4,518/41
계열회사	Burger King	Burger King	-	레스토랑 사업	18,756/51	19,267 /50	18,761/1 38
계열회사	Tim Hortons	Tim Hortons	-	레스토랑 사업	5,287/4	5,593/ 7	5,825/8
계열회사	Firehouse Subs	Firehouse Subs	-	레스토랑 사업	1,175/38	1,203/ 39	1,243/39

7. 최근 사업연도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A. 국내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지역	2023년 말 현재 가맹 점 수	2023년 12월 기준 평균매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합계	12	1,397,933	16,881	2,555,978	31,180	637,060	8,822	
서울	7	1,749,501	20,563	2,555,978	31,180	906,425	14,972	1개 점포는

								6개월 미만 영업
부산	0	해당 없음						
대구	0	해당 없음						
인천	1	850,875		-	-	-	-	5곳 미만
광주	0	해당 없음						
대전	0	해당 없음						
울산	0	해당 없음						
세종	0	해당 없음						
경기	4	877,150		-	-	-	-	5곳 미만
강원	0	해당 없음						
충북	0	해당 없음						
충남	0	해당 없음						
전북	0	해당 없음						
전남	0	해당 없음						
경북	0	해당 없음						
경남	0	해당 없음						
제주	0	해당 없음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2개 가맹점 (서울1, 경기1)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2개가 아닌 10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B. 해외

(단위: USD)

지역	2023년 말 현재 가맹점 수	2023년 12월 기준 평균매출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합계	199	654,026.66		2,295,762.00		131,495.93		
중국	10	212,486.60		536,364.19		82,914.35		3개 점포

								매출액 파악 불가/전 점포 6개월 미만 운영
홍콩	2	-		-		-		점포 매출액 파악 불가
인도	32	317,576.57		884,601.38		131,495.93		15개 점포 6개월 미만 운영
인도네시아	25	648,998.16		945,868.23		435,281.22		15개 점포 6개월 미만 운영
필리핀	58	879,023.92		1,616,466.50		427,431.26		10개 점포 6개월 미만 운영
싱가포르	14	1,552,810.02		2,295,762.00		\$765,255.97		5개 점포 매출액 파악 불가
스리랑카	5	-		-		-		점포 매출액 파악 불가
베트남	53	348,934.05		597,080.62		171,452.44		10개 점포 6개월 미만 운영

- ※ 해외 가맹점포의 면적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면적 3.3제곱미터당 매출액은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고, 영업을 개시한 달은 초일부터 영업한 것으로 가정하여 1년치 매출액을 환산하였습니다.
- ※ 다만 6개월 미만 영업한 64개 가맹점(중국 10, 홍콩 1, 인도 15, 인도네시아 15, 필리핀 10, 싱가포르 2, 스리랑카 1, 베트남 10)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3), 홍콩(2), 싱가포르(5), 스리랑카(5) 일부 점포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총 15개 점포 중 앞서 제외하였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과 중복되는 7개 점포를 뺀 나머지 8개 점포 또한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99개가 아닌 총 12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파파이스 루이지애나키친/파파이스 치킨 앤 비스킷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A. 국내

Popeyes Louisiana Kitchen의 전년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2	240.75 일

B. 해외

가맹본부의 해외 가맹계약 기간은 10년-20년 범위 내입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최근 사업연도 중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판촉 지출 내역(즉, 유형, 미디어채널, 시한 및 비용배분):

가맹본부는 한국에서의 마케팅, 광고, 판촉에 관한 직접적인 경비 일체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국내 각 식당의 전월 총 매출액(MFDA에 정의됨)의 5%를 한국에서의 광고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MFDA 제10조에 따라 국내 각 하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매월 하위 가맹점의 전월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가맹점사업자가 관리하는 광고기금에 납입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월 가맹점사업자 및 각 하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기금에 납입한 총 금액의 2%는 가맹본부가 Popeyes 브랜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송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국내에서 자격을 갖춘 하위 가맹점사업자 후보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계획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고 계획의 사본을 가맹본부에 제공합니다.

11. 가맹금 예치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비 및 비용환급금은 MFDA 체결일로부터 2 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사업을 개시하거나 지속하기 위해(가맹계약 갱신을 통해 본 가맹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가맹본부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항{최초 가맹금, 예치, 최초 할부금, 선납된 임대료 및 장비 구매비용, 그 환불 조건 및 환불불가 사유(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지역개발비 및 비용 환급	미화 377,000달러	MFDA 체결 후 2개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법령상 반환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가맹계약 5.0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될 수 없으며, MFDA 체결 시 전액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금 (MFDA 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개점한 각 직영점별)	미화 10,000 달러	가맹본부 및/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된 직영 레스토랑 개장일 7일 전 까지	상동	상동	MFDA에서 “직영점 수수료”라 합니다. 10년 동안 허여되는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직접개설 점포”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소유, 설립 및 운영하는 Popeyes 식당을 의미합니다. 직접개설 점포는 인수식당(MFDA에 정의됨)을 포함합니다.
가맹금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개점한 각 직영점별)	미화 15,000 달러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가맹금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개점한	미화 20,000 달러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각 직영 점별)					
가맹금 (2026. 1. 1. 이후 개점한 각 직영 점별)	미화 25,000 달 러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가맹금 (각 가맹 점별)	미화 25,000 달 러	(a) 가맹점 운영개시일 과 (b) 가맹 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계약 체결일 중 먼저 도 래하는 날로 부터 10일 이내	상동	상동	MFDA에서 “가맹점 개 별 수수료”라 합니다. 10년 동안 허여되는 가 맹점운영권에 대한 수 수수료입니다. “가맹점”은 가맹점사업 자가 아닌, 가맹점사업 자가 모집한 하위 가맹 점사업자가 별도의 가 맹계약 조건에 따라 한 국에서 소유, 설립 및 운영하는 Popeyes 식당 을 의미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에 대해 청구할 수 있 는 최대 가맹금은 미화 40,000 달러입니다. 가 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 업자가 해당 가맹점에 대해 실제로 가맹금을 청구하거나 징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 본부 또는 그 지정인에 게 총 미화 25,000 달러 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증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예치금, 담보금 등의 지급내역과 반환불이행 사유:

해당 사항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해당 사항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초기 투자에는 다음의 주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아래의 5), 6), 7)항을 참조하십시오.

이들 수치는 미국에서 식당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식당을 가맹한 당사의 경험과 당사의 한국의 마스터 가맹계약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추정액입니다. 귀하는 가맹점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이 추정액에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가맹점을 인수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한국에서 식당 개발과 운영에 경험을 지닌 귀하 자신의 자문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금액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 미국 달러)

구분	금액	면적 3.3m'당 금액(미 달러) (기준평수: 약 70 평) *독립건물 식당, 다업종 건물 식당 등 동일하게 가정	지급 방법	지급 기한	지급 대상	반환 조건
임차시설 개량	325,000 ~ 725,000	4,643 ~ 10,357	합의에 따라	합의에 따라	공급업체, 제3자 계약자	환급되지 않습니다.
장비, 비품 및 간판			일시불	주문에 따라	납품업체	
POS, Back-of-House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 패키지 (Technology Package)			합의에 따라	합의에 따라	납품업체	
설계 및 관리 서비스			합의에 따라	합의에 따라	납품업체	
개업 용품	30,000	429	합의에 따라	발생 시	공급업체	
추가 자금 및 운전자본	15,000	214	합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직원, 공급업체	
부동산 - 임대료	변동	변동	매월	합의에 따라	임대인/납품업체	
초기 교육	30,000	429	합의에 따라	발생 시	직원,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보험	변동	변동	합의에 따라	가입 약관에 따라	보험사/브로커	

영업 첫해의 일반 관리비는 미화 약 2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실제 비용은 귀하의 운영 능력, 경험 및 사업적 감각, 지역의 경제상황, 적정 임금, 경쟁 및 영업 초반에 달성한 매출 수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요소에 좌우됩니다. 위 수치는 평균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실제 비용은 본 정보공개서에 반영된 추정치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수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출처

를 통해 입수한 정보와 비교한 후, 가맹점운영권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귀하의 현지 사업, 재무, 법률 및/또는 기타 자문인과 그 결과를 논의해야 합니다. 위 추정치는 귀하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또는 예상 매출액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귀하의 초기 투자금은 그 어떤 부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정 금액은 당사의 마스터 가맹계약에 따른 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임을 밝힙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모든 식당의 위치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초기 투자는 제공된 장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부동산 및 개량에 대한 귀하의 초기 투자액은 추정할 수 없으나 다음의 요소가 부동산 관련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귀하가 이미 적합한 식당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귀하는 식당을 운영할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 다업종 건물에 소재한 식당의 일반적인 위치는 쇼핑센터, 도심 상업지구 및 교외 쇼핑 지구입니다. 미국의 식당들은 규모에서 1,600-3,500평방피트입니다. 미국 내, 교외의 독립건물 식당은 일반적으로 식당 건물과 주차 시설을 포함하여 28,000-38,000평방피트의 대지를 요합니다. 상업 부지나 식당 공간의 비용은 임차하든, 매입하든, 상업 부동산의 현지 시장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와 건물의 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당사는 임차한 공간의 연간 임차비는 식당이 기존의 소매 상업지구에 위치했는지 여부(예: 편의점, 쇼핑몰), 소매 상업지구의 수준, 건물과 인근 상업 지구의 수준, 그리고 부지 공급 상태 및 동종 매매가격과 임차비 같은 시장 요인에 따라 미화 30,000 - 240,000 달러 사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최고 수치는 뉴욕시의 시장 지구의 임차료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증금은 두(2) 달치 임차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부지를 식당의 용도에 적합하게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위치, 이전 용도 및 부지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60석 규모의 2,695 평방피트의 전형적 식당을 세우는 데 드는 일반적인 석조건축, 구조건축과 건축비는 조경작업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미화 336,875 - 774,447 달러에 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의 재량으로 당사가 승인한 바에 따라 더 작은 건물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48석 규모의 2,308 평방피트의 더 작은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은 조경작업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미화 280,102 - 320,040 달러가 소요됩니다. 다업종 건물에 자리한 식당은 소매 매장의 증축이 일반적이며 건축비용은 미화 225,150 - 572,750 달러 사이입니다. 토지 가

격(구입할 경우)은 위치와 대지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며 당사는 토지 구입가나 토지 개량 작업의 비용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더불어 미국 내의 부지일 경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실사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화 25,000 - 80,000 달러입니다. 이들 수치 모두는 국가마다 다를 것이며 기술된 대로 주로 미국의 개발비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동 식당의 개발 후보자들에는 Popeyes 가맹점이 되는 데 있어 당사가 요구하는 재정적, 경영적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소매 식당 운영 경력이나 식품산업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개인 및 회사가 포함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관리 직원의 고용과 유지에 있어 전적인 책임을 지닙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비, 교육훈련비, 간판대여료, 리뉴얼비, 리모델링비, 가맹사업양도비, 채고처분비, 회계수수료 등 일체의 지급금, 환불조건 및 미환불 사유: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지급대상	반환조건	비고
로열티 (직영점의 경우)	개시일 ~ 2022. 12. 31. - 월 총 매 출액의 2.5% 2023. 1. 1. ~ 2023. 12. 31. - 월 총 매 출액의 3.0% 2024. 1. 1. ~ 2024. 12. 31. - 월 총 매 출액의 3.5% 2025. 1. 1. ~ 2025. 12. 31. - 월 총 매 출액의 4.0% 2026. 1. 1. 이 후 - 월 총 매출액의 5.0%	전월 총 매출 액을 기준으 로 유닛 부속 계약의 전체 기간(해당되 는 경우 유닛 부속계약 갱 신기간) 동안 매월 10일까 지, MFDA 제 7.7조를 참조 하십시오.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로열티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총 매출액”의 정의에 대 하여 가맹계약을 참조하십 시오.
로열티 (인수 식 당의 경 우)	(a) 해당 인 수 식당에 대한 관련 가맹계약에 명시된 로열 티 수수료 또는 (b) 5.0% 중 더 큰 금액	상동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로열티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인수 식당”의 정의에 대 하여 가맹계약을 참조하십 시오.
로열티 (가맹점의 경우)	월 총 매출 액의 5.0%	가맹점의 전 월 총 매출액 을 기준으로 매월 10일까 지, MFDA 제 8.5조를 참조 하십시오.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로열티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총 매출액”의 정의에 대 하여 가맹계약을 참조하십 시오. 가맹점사업자가 하위 가맹 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로열티는 총 매 출액의 8%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하위 가맹 점사업자에게 가맹점에 대 한 로열티를 청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또는

					그 지정인)에 가맹점의 월 총 매출액의 5%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하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로열티가 이보다 적더라도 및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청구 및/또는 징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광고비의 지급	광고기금에 대한 광고분담금으로 매월 총 매출액의 5%. 총 금액 중 2%는 가맹본부 가 Popeyes 브랜드의 글로벌 ini서티브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송금됩니다.	광고기금에 대한 광고분담금의 경우 전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10일까지 글로벌 ini서티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금의 경우 전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가맹본부	환급되지 않습니다.	“광고분담금”, “광고기금” 및 “총 매출액”의 정의에 대하여 CFA를 참조하십시오. 직영점과 가맹점에 대해 모두 5%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	감사 비용	발생할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인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된 감사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승인된 제품의 신규 공급업체를 승인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안된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감사법인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 대신 가맹본부는 단독 재량으로 자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감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가맹본부의 비용과 모든 부수적인 실비를 부담합니다. 2. 광고기금 감사 비용은 광고기금에서 지급되며, 감사 결과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가맹점사업

					자는 분쟁 금액과 감사 비용을 광고기금에 반환해야 합니다. 3. 월 총 매출액의 감사와 관련하여, (a) 보고된 총 매출액과 실제 총 매출액 간의 차이가 실제 총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b) 가맹점사업자가 CFA 제9.2조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월의 총 매출액에 대한 보고서를 가맹본부에 교부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출장, 숙박, 고용 인력의 임금 및 계약자의 부담금을 포함한 감사 비용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당사의 원가 및 비용	발생할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중재 및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전문가 비용 포함)이 지급됩니다.
배상	당사에 발생된 손실과 비용	발생할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귀하는 당사의 원가 비용과 일체의 판결금을 반드시, 당사에 배상하고 환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귀하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당사를 고소할 경우(귀하가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계약 이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원가를 반드시 환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귀하가 당사와 PLK 피면책 당사자(가맹계약에 정의됨)를 면책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MFDA 제19조 및 CFA 제12.5조

					를 참조하십시오.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금에 대한 이자	연 10% 또는 법이 정한 한도 중 낮은 금액	체납된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금에 대한 이자는 귀하의 지급기일로부터 당사가 수령한 날까지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총 매출액 누락에 대한 이자	연 10% 또는 법이 정한 한도 중 낮은 금액	발생할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누락된 총 매출액에 대한 이자는 귀하의 지급기일로부터 당사가 수령한 날까지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분담금 부족분에 대한 이자	연 10% 또는 법이 정한 한도 중 낮은 금액	발생할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 시 광고분담금 부족분에 대한 이자는 예치나 송금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달의 말일부터 산정되며, 해당 이자는 지급 시 가맹점사업자가 납입하여야 했던 광고기금에 가산됩니다.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 실험	신제품의 실험비용	발생할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메뉴 아이템 실험과 관련하여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기밀 제품	현재 가맹본부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승인된 공급업체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승인된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변동 수수료 및/또는 비용입니다.	합의에 따라	승인된 공급업체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오로지 당사가 지정하는 납품업체(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만 특정 사업기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밀 제품의 비용은 승인된 공급업체에게 지불하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개발, 검토 및 승인 비 용	발생할 경우, 요구 즉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유지보수 및 수리	Popeyes 식 당의 수리, 유지보수, 상 태 및 외관 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당시 기준에 따라 식당을 양호한 상태 로 유지 하 고 수리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 수 수료	계약지역 (MFDA에 정 의됨)에 대 해 가맹본부 가 단독 재 량으로 정한 당시 수수료	직영점의 경 우, 해당 직영 점의 유닛 부 속계약 기간 만료 전 가맹점의 경 우, 가맹계약 기간 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은 계약 요건에 따릅니다. 해당 계약 요건에 대해 CFA 제2.5조 및 가맹점과 관련된 가맹계약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양도 수수료	미화 10,000 달러에 가맹점 수를 곱한 금액	양도일(CFA에 정의됨)까지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CFA에 정의됨)와 관련하여 지급하되, 가맹점 사업자의 지분증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지배권 변동에 의한 양도(CFA에 정의됨)만 양도 수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소 및 사업장 비용	국내 영업소 및 사업장 유지비	발생할 경우	제3자 부동산 소유주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식당 부지 선정, 취득 및 개발 비용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정부 승인·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식당 부지의 발굴, 취득 및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 경비 및 책임	발생할 경우	제3자 부동산 소유주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원조회 비용	신원조회 비용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하위 가맹점사업자 또는 양수인을 승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각각의 제안된 하위 가맹점사업자 또는 양수인과 그 책임자 및 주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락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급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한 필수 신원조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맹계약(MFDA에 정의됨) 집행 비용	집행 비용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하위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관련 가맹계약의 조건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경비를 가맹본부에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하위 가맹계약서에 따른 가맹본

					부의 제3자 수익자 권리를 집행하는 비용을 가맹본부에 환급해야 합니다
하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또는 제3자 공급업체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 서비스(MFDA에 정의됨), 훈련 서비스(MFDA에 정의됨), 개점 전 서비스 및 개점 감독 서비스(MFDA에 정의됨), 모니터링 서비스(MFDA에 정의됨) 및 불만 신고 시스템의 시행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가맹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 비용 MFDA 제8.12조, 제9.1.2조, 제14조 및 제15조와 MFDA 제7.4조 내지 제7.5조를 포함한 MFDA 및 CFA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에서의 신규 상표 심사 및 등록 비용	심사 및 등록 비용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인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승인, 인허가 및 등록	정부 당국의 승인, 인허가 및 등록 취득 및 유지 비용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인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번역 비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문서(예: 기밀 운영 매뉴얼)의 번역, 가맹계약, 등록, 인허가 등의 번역과 관련된 비용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인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는 귀하에게 문서 또는 전자 형식으로 영어로 된 기밀 운영 매뉴얼을 1부 제공할 것입니다. 위 기밀 운영 매뉴얼은 Popeyes 시스템의 식당 운영을 위한 기준, 양식, 절차 및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게시판, 비디오테이프, 전자우편 또는 기타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밀 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기밀 운영 매뉴얼의 모든 수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Popeyes 시스템의 명성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보호 및 고양하기 위해 모든 POPEYES LOUISIANA KITCHEN 식당에서 양질 및 동일한 품질 수준, 청결성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공급자에 대하여 통일된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귀하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잠재적 공급자에게 기준 및 양식을 전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비밀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잠재적 공급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주기적으로 식당을 관찰하고, 식당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관련하여 VII.3 및 VIII를 함께 참조하십시오.

가맹본부는 지역의 물품, 식품 또는 음료, 공급, 설비, 기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 시장에 대한 운송지원을 포함하여 기술적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물품들은 가맹본부가 수시로 마련하는 기준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식당 사업장에 대한 정기 검사 및 식당에서 사용 및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계약지역(MFDA에 정의됨)에 대해 가맹본부가 그 단독 재량으로 정한 당시 갱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갱신은 가맹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PLK 양수인(가맹계약에 정의됨)은 가맹계약의 조건에 구속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그의 단독 재량으로 Popeyes 시스템에 이익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에서의 Popeyes 시스템과 레스토랑에 사용되는 Popeyes 표식을 수정, 추가, 사용중단 또는 다른 Popeyes 표식으로 교체할 권한을 가집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러한 수정, 추가, 사용중단 및 교체에 관하여 고지받은 즉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모든 CFA 유닛 부속계약이 기간만료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가맹사업을 중단할 명시적인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여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는 양도일 전에 미화 10,000 달러에 가맹점사업자가 개업하여 운영하는 식당 수를 곱한 금액을 양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도 수수료는 모든 양도(CFA에 정의됨)에 대해 지급해야 하나, 가맹점사업자의 지분증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지배권 변동에 의한 양도(CFA에 정의됨)만 양도 수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의 범위

가맹계약 기간 중 및 가맹계약과 각 CFA 유닛 부속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의 경쟁금지약정은, 경쟁업체(MFDA에 정의됨)를 소유하거나, 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경쟁업체를 운영하거나, 그에 고용되거나, 그에 대해 투자하거나, 경쟁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지배하거나, 경쟁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컨설팅, 마케팅, 광고, 교육, 모니터링, 개발, 보고 및/또는 징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및/또는 경쟁업체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마스터 가맹계약자로서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가 계약을 종료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식당을 개발, 설립 또는 운영하지 않고, 새로운 식당을 개발,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하위 가맹점사업자에 허여하지 않고, 당사 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Popeyes 표식이나 Popeyes 지식재산 또는 혼돈을 초래하는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Popeyes 시스템의 일부분 및 Popeyes 표식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해서는 안 되고, 모든 밀린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기밀 운영 매뉴얼과 다른 독점적 재료를 반납하고, Popeyes의 시스템이나 Popeyes 표식을 사용하는 일체의 웹사이트를 제거하거나 양도하고, IP 라이선스 또는 계약 등록을 말소하고,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MFDA에 정의됨)과 관련된 모든 가맹계약(MFDA에 정의됨)을 당사에 양도하고, 당사가 그리 선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식당에 관련된 자산을 당사에 매각하고, 당사가 그리 선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임차권을 당사에 양도하고, 당사가 당사의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모든 손실과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경쟁금지 약정을 준수하고, 귀하의 계약 종료 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당사가 요청하는 모든 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FDA 제17조 및 CFA 제15조를 참조하십시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구입 및 임차

- 1) 가맹점주가 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자재 또는 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공급가격은 가맹사업자가 공급자간 결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그 가격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개시 또는 경영상 필요로 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제품, 원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는지:

해당사항 없음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품목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제한 내용 및 위반 시 책임
제품과 메뉴 아이템	V.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오로지, 당사의 표준에 부합하고 서면으로 판매가 승인된 제품과 메뉴 아이템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료	당사의 지정 음료 공급업체	귀하는 반드시, 당사의 지정 음료 공급업체가 생산한 음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반드시, 당사가 승인을 철회한 일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귀하는 반드시 당사가 기밀 운영 매뉴얼 또는 서면 또는 달리 지정한 모든 메뉴 아이템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특정 아이템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로부터 그러한 아이템의 판매 금지를 통지 받는 즉시, 해당 아이템의 판매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FDA 제9조 및 CFA 제5조를 참조하십시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 사항 없음.

위에 설명된 것 외에, 당사는 가맹계약서 상에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귀하가 판매할 수 있는 고객층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오로지 식당에서 만든 제품과 메뉴 아이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다른 곳에서 만든 상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한 상품을 재판매하려

는 의도를 가진 일체의 다른 당사자에게 제품과 메뉴 아이টে을 판매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어떤 가격에든 제품과 메뉴 아이টে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가 권장하거나 추천하는 일체의 판매가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MFDA의 해지 또는 만료 전에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공항 및 군사시설(이와 인접한 주택 및 지원 지역 포함)을 제외하고 한국의 법적(de jure) 경계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MFDA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 및 CFA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CFA에 따른 유닛 부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당사 또는 당사의 자회사는 Popeyes 식당에 대한 관련 유닛 부속계약 또는 가맹계약의 조건에 따라 귀하가 CFA에 따라 또는 하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MFDA에 정의됨)에 따라 소유 및 운영하는 Popeyes 식당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 또는 하위 가맹점사업자가 소유 및 운영하는 Popeyes 식당이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경우, 해당 Popeyes 식당과 관련된 반경 제한은 오로지 쇼핑몰로만 구성된 면적으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자회사/계열사
미국 남부식 프라이드 치킨을 주요 메뉴 아이টে으로 제공하는 퀵 서비스 식당	Popeyes Louisiana Kitchen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위 V.4.1)를 참조하십시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CFA에 따른 관련 유닛 부속계약 또는 가맹점(MFDA에 정의됨)에 대한 관련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위 V.4.1)에서 논의한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변경 사유	변경 절차	승인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영업지역 조정 제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합의에 임해야 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갱신 유닛 부속계약 또는 가맹계약에 변경된 영업지역을 반영함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오로지 당사가 승인한 위치에서만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외 및 당사가 승인한 식당 위치 이외의 외부 지역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및 지정인은 (a) 위 V.4.1)에서 논의한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외에서 Popeyes 식당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가맹점운영권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 (b)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현재 또는 향후에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브랜드 및 가맹 시스템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한국 또는 해외에서 영위하거나 영위할 수 있는 가맹점운영권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단, 계약지역에서 미국 남부식 프라이드 치킨을 주요 메뉴로 제공하는 퀵 서비스 식당(MFDA에 정의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됨), (c) 국내 어느 곳에서든 다른 유통채널(MFDA에 정의됨)을 통해 Popeyes 식당이 아닌 장소에서 식당과 근접하게 위치하거나 달리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Popeyes 시스템 및 Popeyes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시스템 또는 상표(기타 브랜드 포함, MFDA에 정의됨)를 사용하여 Popeyes 메뉴 아이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뉴 또는 기타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유통, 판매 또는 제안하거나 유통, 판매 또는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MFDA상 가맹점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Popeyes 시스템 및 Popeyes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시스템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 Popeyes 식당이 아닌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Popeyes 메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뉴 또는 기타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유통, 판매 또는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러한 유통, 판매 또는 제안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에는 가맹본부가 단독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수준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유통채널과 관련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가맹본부는 그러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위 V.4.5)를 참조하십시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갱신기간

MFDA의 기간은 MFDA 서명일에 시작하여 2041. 12. 31.에 종료됩니다. 직영점(MFDA에 정의됨)에 대한 각 유닛 부속계약 및 가맹점(MFDA에 정의됨)에 대한 각 가맹계약의 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직영점에 대한 각 유닛 부속계약과 가맹점에 대한 각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정 계약적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1회에 한해 추가 10년의 갱신 옵션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적시적 통보(기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로 하되, 180일 이전보다 늦은 시간), 금전적 책무 완수, 가맹계약 및 기타 합의 내용 준수, 완납 상태, 새 가맹계약 및 기타 합의서 서명, 모든 청구권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 갱신기간 동안 식당 입지 유지, 가맹본부가 재무승인을 위해 신규 가맹점사업자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당시 재무비율 충족, 계약지역(CFA에 정의됨) 내 Popeyes 식당의 현재 이미지(CFA에 정의됨)에 부합하도록 가맹점 운영 상태 유지. 갱신하기 위해 귀하는 당사가 당사의 재량으로 계약지역에 대해 정한 당시 가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FA 제2.5조를 참조하십시오.

2) 가맹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가맹점은 계약 만기일 최소 90일 이전에(하지만 180일 이전보다는 늦은 시간) 전체 계약기간(최초 기간을 포함)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을 최대 10년까지 요청할 권한을 지닙니다.

귀하는 (i)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ii)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iii) (a)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b)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c)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또는 (d)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등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가맹점사업자의 중요한 사업 정책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지니지 않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i) 가맹점의 계약 연장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밝히는 거부 통지문을 전달함으로써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데 실패하거나, 또는 (ii) 만기 최소 90일 이전에(하지만 만기 180일 이전보다 늦은 시간에) 계약 연장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맹점의 갱신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는 동일한 거래 조건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해당 절차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일정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는가? [예 (2), 아니오 (7)]	만기 전 180일 ~ 90일
(2) 일체의 요청 거부 사유 (iii)이 본 사안에 해당되는가? [예 (4), 아니오 (3)]	만기 전 180일 ~ 90일
(3) 가맹본부가 계약 기한을 수정하면서 통지문을 전달하였는가? [예 (5), 아니오 (A)]	만기 전 180일 ~ 90일
(4) 가맹본부가 요청 거부의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예 (B), 아니오 (A)]	(1)로부터 30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한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는가? [예 (C), 아니오 (6)]	-
(6) 수정된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예 (B), 아니오 (D)]	-
(7)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문을 전달하였는가? [예 (B), 아니오 (8)]	만기 전 180일 ~ 90일
(8)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예 (E), 아니오 (A)]	만기일 60일 전

A. 이전과 동일한 조건의 가맹계약에 재계약	만기일
B. 계약 만기일에 계약 종료	만기일
C. 수정된 조항의 가맹계약에 합의	만기일
D. 당사자들은 계약 기한을 수정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가맹본부가 수정을 주장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E. 당사자들은 계약을 종료하거나 수정된 기간의 가맹계약의 재계약을 위해 (이는 민사소송의 사안일 수 있음, FFTA는 이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위 V.6.1)를 참조하십시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프랜차이지가 파산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파산법 또는 주도산법이나 유사한 법률상 여하한 종류의 구제수단을 구하는 소송 또는 신청을 제출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또는 여하한 자가 프랜차이지의 파산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로부터 60일 내에 동 신청 또는 소송이 기각되지 않거나), 채권자들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거나, 프랜차이지의 물품에 압류 또는 집행명령이 부과되거나, 프랜차이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인, 청산인, 수탁인 또는 관재인이 선임되거나 그러한 자의 선임 신청이 있거나, 모라토리엄을 포함하여 수시로 시행되는 도산, 파산, 화의 또는 모라토리엄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 조치가 취해지거나, 또는 프랜차이지가 자신의 사업을 청산 또는 해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CFA 15.1. (p)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 ³]가 파산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파산법 또는 도산법이나 유사한 법률상 여하한 종류의 구제수단을 구하는 소송 또는 신청을 제출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MFDA 17.1.11

³ 마스터프랜차이지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가맹계약 당사자명이며 일괄 삭제하였음을 밝힙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또는 여하한 자가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의 파산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로부터 60일 내에 동 신청 또는 소송이 기각되지 않거나), 채권자들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거나,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의 물품에 압류 또는 집행명령이 부과되거나,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인, 청산인, 수탁인 또는 관재인이 선임되거나 그러한 자의 선임 신청이 있거나, 수시로 시행되는 도산, 파산, 화의 또는 모라토리엄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 조치가 취해지거나, 또는 마스터프랜차이지가 자신의 사업을 청산 또는 해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나아가,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상세 내역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최소 2개월의 기간 동안(MFDA 제17조 및 CFA 제15조에 규정된 추가 시정기간 또는 조건에 따름) 위반이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당사의 종료 의지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의 사유로 특정 식당 또는 모든 식당(각각 MFDA 및 CFA에 명시됨)에 대한 MFDA, CFA 및/또는 유닛 부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MFDA 해지사유]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마스터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PLK(또는 그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반사유가 해당 지급기일 후 10일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MFDA 17.1.1
[*** ⁴]가 (a) 본 계약 제2.10조에 명시된 총지분출자금의 여하한 분할금을 도래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b) 해당 지급일 또는 그 직후에 각 분할금의 지급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MFDA 17.1.2
마스터프랜차이지가 총지분출자금을 엄격하게 제2.10조의 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MFDA 17.1.3
마스터프랜차이지가 본 계약의 규정 및 개발일정을 전제로 하여 각 개발연도 말까지 해당 개발연도의 본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MFDA 17.1.4
마스터프랜차이지가 제5조(개발의무)에 명시된 그 밖의 다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MFDA 17.1.5
(a)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가 제21조(이전 및 양도)를 위반하여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마스터프랜차이지에 허여된 개발권을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 또는 부담을 설정하거나, 서브라이선스하거나, 달리 처분하는 경우, (b) 마스터프랜차이지, [***] 또는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이 PLK 또는 PLK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파파이스 시스템이나 기타 브랜드를 복제하거나 복제를 시도하는 경우, (c) 마스터프랜차이지, [***] 또는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이 제18조(비밀성)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d) 마스터프랜차이지, [***] 또는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이 경쟁사업체의 지분을	MFDA 17.1.6

⁴ 마스터프랜차이지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가맹계약 당사자명이며 일괄 삭제하였음을 밝힙니다.

인수하거나 제13조(경쟁)에 명시된 규정을 달리 위반하는 경우;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해당 개점에 대한 PLK의 부지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 (a)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직영매장에 대하여 완전히 체결된 가맹점계약서 및 (b) 본 계약에 따라 해당 직영매장에 대한 직영매장수수료를 PLK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파파이스 상표 또는 파파이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즉, 전세계적 상표, 서비스표, 상호, 트레이드 드레스, 로고, 슬로건, 디자인 및 기타 상업적 상징 및 출처확인이 가능한 표시(및 이와 관련된 영업권))를 사용하는 직영매장 또는 기타 매장을 개점하는 경우	MFDA 17.1.7
(a) 마스터프랜차이지가 회사프랜차이즈계약 또는 가맹점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PLK(또는 그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PLK가 이를 서면 통지한 후 20일 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마스터프랜차이지가 회사프랜차이즈계약 또는 가맹점계약을 중대한 면에서 준수하지 아니하고 PLK가 마스터프랜차이지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마스터프랜차이지가 해당 시정기간(있는 경우)내에 그 준수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다만, 시정기간은 고객, 마스터프랜차이지의 직원 또는 일반 대중들의 즉각적인 안전 또는 보건을 위협하는 위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MFDA 17.1.8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계약의 중대한 조건을 위반하고(각 프랜차이즈계약에 명시된 해당 시정기간 내에 시정된 위반은 제외함) 그 위반이 해당 시정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PLK가 마스터프랜차이지에게 해당 프랜차이지로 하여금 관련 프랜차이즈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게 하거나 관련 프랜차이지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하고, PLK가 마스터프랜차이지에게 그와 같이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한 후 30일 내에 마스터프랜차이지가 동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MFDA 17.1.9
마스터프랜차이지가 중대한 면에서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여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MFDA 17.1.10
마스터프랜차이지가 파파이스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파파이스 지식재산권이나 기타 상표(및 이와 관련된 영업권)의 유효성에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MFDA 17.1.12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그 주주들이 PLK 또는 그 계열회사들에 제공한 정보, 진술 또는 보장이 제공된 때에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	MFDA 17.1.13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그 피지정인이 광고기금, 광고출자금 또는 그 일부를 유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	MFDA 17.1.14
마스터프랜차이지, [***] 또는 마스터프랜차이지나 그 계열회사의 이사회 이사 또는 고위직 임원이 마스터프랜차이지, [***], 해당 계열회사, PLK 또는 파파이스 브랜드의 평판에 중대하게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고, 해당 이사회 이사나 고위직 임원이 PLK가 마스터프랜차이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후 30일 내에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 경우(해당 인은 PLK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다시 복직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함);	MFDA 17.1.15
마스터프랜차이지 또는 [***]가 본계약의 기타 조건 또는 조항을 중대한 면에서 준수하지 아니하고 동 위반 사유가 PLK가 마스터프랜차이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MFDA 17.1.16
[***]에게 해당하는 상기 위반사유가 [***]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가 본	MFDA 17.1.17

계약 제20조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마스터프랜차이즈가 제2.13조에 규정된 주요결정과 관련하여 PLK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MFDA 17.1.18
마스터프랜차이즈가 제2.12조에 명시된 유지관리확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동 위반사유가 PLK가 마스터프랜차이즈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10일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MFDA 17.1.19
마스터프랜차이즈 또는 그 계열회사가 PLK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RBI 프랜차이즈의 소유지분을 (해당 RBI 프랜차이즈 또는 그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자산이나 지분증권의 인수를 통해 또는 이러한 회사와의 신설합병, 흡수합병, 구조개편, 합병 또는 유사한 조합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	MFDA 17.1.20
다른 RBI 프랜차이즈나 그 계열회사가 PLK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직·간접적으로 마스터프랜차이즈 또는 그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소유지분을 (마스터프랜차이즈 또는 그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자산이나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이러한 회사와의 신설합병, 흡수합병, 구조개편, 합병 또는 유사한 조합에 의해서인지 여부를 불문함) 인수하는 경우.	MFDA 17.1.21

[CFA 해지사유]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a) 프랜차이즈가 비밀운영매뉴얼 및 서비스, 청소, 보건 및 위생에 관하여 PLK 또는 그 계열회사들이 수시로 수립하는 기타 모든 운영기준 및 사양을 포함하여 파파이스 시스템의 요건에 따라 가맹매장을 유지 또는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PLK의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CFA 15.1.(a)
(b) 전 항에 따른 프랜차이즈의 위반이 PLK의 상업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 프랜차이즈의 직원 또는 일반 대중들의 즉각적인 안전 또는 보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성격의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이 경우, 프랜차이즈는 PLK가 프랜차이즈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심각한 보건 또는 안전 위반사항이 PLK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시정될 때까지 가맹매장의 운영을 즉시 중단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맹매장을 폐쇄하지 않는 것은 추가적인 위반 사유가 된다. 이러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CFA 15.1.(b)
(c) 프랜차이즈가 PLK의 사양과 일치하지 않거나 PLK가 승인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PLK의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CFA 15.1.(c)
(d) 프랜차이즈가 본 계약에 따라 가맹매장에서 판매하도록 요구되는 PLK 지정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프랜차이즈는 PLK의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프랜차이즈가 시정기간 내에 해당 제품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시정기간은 PLK가 결정하여 프랜차이즈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연장되나, 프랜차이즈는 시정기간 내에 동 위반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조치에 착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CFA 15.1.(d)

추진하여야 한다.	
(e) 프랜차이지가 본 계약 또는 본건 표준에 따라 PLK가 요구하는 장비 또는 장식을 설치 및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 PLK의 승인이 요구되는 장비, 유니폼 또는 장식(décor)을 PLK의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CFA 15.1.(e)
(f) 프랜차이지가 가맹매장을 양호하고 보수가 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PLK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현재 이미지를 반영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량, 개조 또는 리모델링을 중대한 면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CFA 15.1.(f)
(g) 프랜차이지가 로열티, 광고출자금 또는 가맹매장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기타 금액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PLK 또는 그 계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PLK의 통지를 수령한 후 10일 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CFA 15.1.(g)
(h) 프랜차이지가 각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것으로 PLK가 프랜차이지의 사업 또는 가맹매장을 조사하거나, 그 장부 및 기록을 검사하거나, 가맹매장의 매출 및 회계기록을 감사할 권리, 또는 제5.15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프랜차이지 및/또는 가맹매장에 대한 기타 검사, 조사 또는 감사(동 검사, 조사 또는 감사와 관련된 프랜차이지 직원들과의 면담 포함)를 수행할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PLK의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하고, PLK가 해당 시정기간 중에 관련 가맹매장에 대한 재조사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시정기간은 PLK가 관련 가맹매장에 대한 재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연장된다.	CFA 15.1.(h)
(i) 프랜차이지가 제3.2조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더 이상 로케이션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PLK의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점유 손실이 정부 권한의 적절한 행사에 기인하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PLK의 동의를 얻어 이용가능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 지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CFA 15.1.(i)
(j) 프랜차이지가 PLK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매장을 포기한 경우. 프랜차이지는 PLK의 통지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지는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매장이 폐점하고 있거나, 비워져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5일 이상 영업을 중단된 경우 가맹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CFA 15.1.(j)
(k) 프랜차이지가 (i) 모든 중대한 법률 및 본 계약 제3.1조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가맹매장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ii) 제4.7조에 따른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CFA 15.1.(k)
(l) 여하한 가맹매장 또는 로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재산에 관하여 집행명령이 부과되고, 동 부과가 15일 내에 취소되지 않는 경우.	CFA 15.1.(l)
(m) (i) 프랜차이지가 PLK가 시정되어야 할 위반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30일 내에 본 계약의 해당 조건의 위반을 시정하지 않거나, (ii) 프랜차이지 또는 프랜차이지의 계열회사가 MFDA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전후로 프랜차이지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PLK 또는 PLK 계열회사가 일방 당사자인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CFA 15.1.(m)
(n)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계약기간 중에 12개월 동안 3회 이상 동일한	CFA 15.1.(n)

가맹매장과 관련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프랜차이지는 해당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o) 프랜차이지가 로케이션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가맹매장과 관련된 기타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여야 한다.	CFA 15.1.(o)
(q) 프랜차이지에 대하여 확정적이고 더 이상 다툼이 불가능한 판결 또는 중재판정(PLK가 승소한 더 이상 다툼이 불가능한 확정 판결 또는 중재판정 포함)이 30일 동안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판결 또는 판정이 3개 이상의 가맹매장들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본건 라이선스에 대한 집행명령이 부과되고 그러한 부과가 15일 내에 취소되지 않는 경우	CFA 15.1.(q)
(r) 프랜차이지 또는 영업이사가 (i)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위법행위 또는 처벌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기, 부정직 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주요 요인으로 하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ii) 프랜차이지 또는 프랜차이지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가맹매장 또는 기타 파파이스 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각 경우에 영업이사가 상기 기소 또는 유죄판결 후 30일 내에 영업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지에게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CFA 15.1.(r)
(s) 프랜차이지가 가맹매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자 및 프랜차이지의 대주, 임대인 또는 기타 벤더가 교부한 다툼이 없는 중대한 계산서, 청구서 또는 명세서 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지연이 PLK, 프랜차이지 또는 그 계열회사, 또는 계약지역 내 파파이스 시스템(전체 또는 일부)의 평판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CFA 15.1.(s)
(t) 프랜차이지가 알면서 본 계약 또는 기타 거래계약상 요구되는 총매출 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 회계 또는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프랜차이지가 알면서 PLK에 의한 본 계약 체결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지가 가맹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적인 방식으로 행위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지에게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CFA 15.1.(t)
(u) 프랜차이지가 파파이스 상표, 비밀정보, 기타 상표의 효력 또는 소유권이나 파파이스 시스템에 대한 PLK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지에게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CFA 15.1.(u)
(v) 제14조(양도제한) 또는 제19.8조(양도제한)을 위반하는 양도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지에게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CFA 15.1.(v)
(w) 프랜차이지가 파파이스 시스템 또는 PLK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 시스템을 사용 또는 복제하거나, 부당경쟁행위를 하거나, 제17조(제한규정)를 위반하여 경쟁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제11.3조(비밀정보)를 위반하여 PLK의 비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지에게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CFA 15.1.(w)

(x) 정부당국이 프랜차이지, 영업이사 또는 프랜차이지의 다른 고위직 임원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고 영업이사 및/또는 프랜차이지의 해당 고위직 임원이 이에 연루된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영업이사 및/또는 해당 고위직 임원이 상기 결정 후 30일 내에 영업이사 또는 고위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지에게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CFA 15.1.(x)
(y) 프랜차이지 또는 그 계열회사나 프랜차이지 또는 그 계열회사의 이사회 이사 또는 고위직 임원이 프랜차이지 또는 계열회사, PLK 또는 그 계열회사나 계약지역이나 전세계 다른 국가 또는 지역 내의 파파이스 브랜드의 평판에 중대하게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고, 해당 고위직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가 PLK이 프랜차이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후 30일 내에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 경우(해당 인은 PLK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다시 복직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함)	CFA 15.1.(y)
(z) PLK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프랜차이지가 하나 이상의 가맹매장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계약 또는 컨설팅약정을 체결한 경우.	CFA 15.1.(z)
(aa) 본 계약에서 요구되는 보험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프랜차이지는 통지 수령 후 5일 내에 위반 사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CFA 15.1.(aa)
(bb) 제15.1(p)조부터 제(aa)호까지 명시된 여하한 위반 사유가 [*** ⁵]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가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를 구성하는 1인 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 위에 명시된 시정기간은 [***]에 대하여 적용되며 프랜차이지는 [***]가 해당 위반 사유를 시정하게 한다	CFA 15.1.(bb)
(cc) 프랜차이지가 배달프로그램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CFA 15.1.(cc)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맹계약은 모든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지닙니다. 당사는 일체의 매수 제안과 동일한 제안을 할 수 있으나, 당사가 매수를 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귀하의 매각에 대한 당사의 동의를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의 만기 또는 종료 시 가맹점에 대한 모든 가맹계약(MFDA에 정의됨)은 MFDA에 명시된 전환기간에 따라 당사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⁵ 마스터프랜차이지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가맹계약 당사자명이며 일괄 삭제하였음을 밝힙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어떤 양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양도 승인 조건에는 당사 및 제3자에 대한 지불의무가 있는 금전의 지급, 가맹계약 또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와 체결한 기타 계약의 이행, 경쟁금지 약정의 준수, 면책 합의서 서명, 당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양수인, 이전에 서명된 모든 가맹계약서의 동시적 양도, 양도 계약서, 양수인의 새로운 가맹계약서와 보증서 서명, 식당의 리모델링 및 수리와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현금흐름을 보유한 양수인, 양수인 직원의 훈련, 법인/파트너십 문서 규정의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는 모든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개점하여 운영하는 식당 수에 미화 10,000 달러를 곱한 금액의 양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의 지분증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지배권 변동에 의한 양도(MFDA에 정의됨)만 양도 수수료 지급 사유가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해당 사항 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대리행사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계약 기간 중 및 가맹계약과 각 CFA 유닛 부속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의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업체(MFDA에 정의됨)를 소유하거나, 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경쟁업체를 운영하거나, 그에 고용되거나, 그에 대해 투자하거나, 경쟁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지배하거나, 경쟁업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컨설팅, 마케팅, 광고, 교육, 모니터링, 개발, 보고 및/또는 징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및/또는 경쟁업체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마스터 가맹계약자로서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관련 법률에서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귀하는 당사가 기밀 운영 매뉴얼 또는 달리 수시로 명시하는 시간과 일자에 매일 영업해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가 달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는 CFA 기간 동안 항상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 운영책임자(Chief Operations Officer)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및 기타 식당 관련 계약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기타 임원이 될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를 고용해야 하며, 상무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상무이사이거나 당사가 사전에 승인한 기타 자연인인 운영이사(Operations Director)를 선임, 고용 및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각 식당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할 1인 이상의 식당 매니저를 선임하고 고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는 식당의 모든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고용 조건 및 보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정 직원 훈련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VIII를 참조하십시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귀하의 매장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단, 귀하의 관리직 직원은 아래 VIII에 설명된 당사의 최소 의무 훈련 규정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9. 광고와 판촉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귀하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총 매출액(가맹계약에 정의됨)에 5%를 곱하여 산정된 월 광고분담금을 광고기금(가맹계약에 정의됨)에 납입하고, 국내 각 하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Popeyes 글로벌 이니셔티브(MFDA에 정의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모든 식당에 대해 해당 월의 광고분담금 총액의 2%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인에게 송금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이 부담한 관리비는 전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지역광고는 관련 법률, 가맹계약 및 글로벌 마케팅 정책(가맹계약에 정의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정 표준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절차와 규정에 따라, 귀하는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또는 그러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일체의 광고나 판촉 계획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특별히 디자인된 건물, 독특한 인테리어 및 외부 배치, 장식, 색상안, 가구, 음식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밀 음식 포물러 및 조리법, 특히 파파이스 치킨 및 해산물 제조에 사용되는 독특한 반죽 포물러, 특별화된 메뉴, 설비 및 설비 배치에 관한 기준 및 사양, 제품, 운영 절차,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하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동안 습득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어떠한 문서도 인쇄 또는 복사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경쟁법 및 영업비밀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책임자 및 그 계열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책임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가맹본부와 그 계열회사들에 대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징계적 손해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를 포기하며,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한정하기로 합의합니다.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PLK 임원이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성희롱을 저지르고 프랜차이지의 파파이스 사업의 평판 또는 신뢰성에 해를 끼쳤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내려진 최종판결에 따라 판정된 범위 내에서 PLK에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부담 또는 지출한 손해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가맹금 지급 방법 및 절차는 IV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내역	일정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와의 초기 협의	- 기밀유지계약 체결 - 투자 설명 자료 - 예비 사업계획 자료	약 1개월 ~ 3개월
거래문서 작성	- 마스터 가맹계약 및 관련 거래서류 작성	약 2개월 ~ 6개월
법률상 요구되는 가맹 정보 공개 기간	-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필수 공개 기간 14일	법률에 따름
거래 체결 및 종결	- 가맹점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 -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최초 자본약정금 예치 - 지역개발 수수료 및 비용 환급 청구 및 지급 - 거래계약 서명 및 체결 - 거래 종결 보도자료	약 0.5개월 ~ 1개월

단계	내역	일정
가맹점사업자의 첫 신규 입지 개점 요청	- 이메일을 통한 요청의 접수	210일 전
부지 검토 및 확정	- 담당 책임자와 상담(부지 중개인(finder) 또는 개발책임자) - 부지 정보 검토, 거래 지역, 부지 위치 및 매장 형태 결정 - 요청 부지 승인	210 - 180일 전
임대차 체결	- 임대차 협상 및 체결 - 건축허가 서류 작성	180일 전
매장 설계 및 도면	- 매장 평면도 설계 - 도면 수정	150일 전
인허가 확보	- 매장 설계 확정 - 공사일정 확인	100일 전

공사 개시	- 기공	90일 전
실내장식	- 매장 공사 및 실내장식 확정	45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서(유닛 부속계약) 교부 및 체결	30일 전(개점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가맹금 지급	- 가맹금 청구서 발행 - 수수료 지급	7일 전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단, 직영점 예정 영업개시일 7일 이전)
운영 준비	- 직원 훈련 제공 - 운영 준비, 재고 비축 등	3일 전
매장 개업	- 매장 개업 및 사업 개시	만기일
총 소요시간 및 비용	IV를 참조하십시오.	약 210일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계약 후의 분쟁 해결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 청구권이나 쟁점은 가맹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에서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위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회부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법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청구서 및 기타 추가 서류 등 증빙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항목에 명시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변상함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여하한 사유로 유닛부속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고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한 부의 영문 기밀 운영 매뉴얼을 대여해 줄 것입니다. 기밀 운영 매뉴얼은 Popeyes 식당의 운영을 위한 Popeyes 시스템의 기준, 사양, 절차 및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때때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수시로 개발할 수 있고 Popeyes 식당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마케팅 및 광고 조사 데이터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맹본부는 Popeyes 식당 운영과 관련된 음식 준비, 장비, 식품, 포장, 서비스 및 식당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발, 기술 및 개선사항을 전달합니다.

가맹본부는 식당 운영을 포함하여 Popeyes 시스템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계속 전달하고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사람을 통해서나 이따금씩 마련된 전자 또는 서면 게시물을 통하여 레스토랑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위와 같은 계속적 자문 지원을 영어로 제공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Popeyes 시스템의 명성과 Popeyes 시스템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Popeyes 식당에서 통일된 높은 수준의 품질, 청결, 외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공급업체를 승인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으면 가맹점사업자의 장래 공급업체에게 관련 기준과 사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MFDA가 해지된 후에만 가맹본부가 결정한 장소의 훈련 시설 및/또는 Popeyes 식당에서 실시되는 개점 전 훈련 프로그램과 가맹본부가 단독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각 식당에서 개점 전 및 개점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일체의 후보 가맹점에게 일체의 신용이나 여신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 명칭 (의무/선택 프로그램) (주1)	내역 (강의/현장 실습)	최소 소요 시간	가맹점 비용 부담	기한
Popeyes 관리 훈련 (의무)	PMC 관리 훈련 프로그램에서, 당사는 훈련생들을 그들이 식당에서 사용할 장비와 시설에 노출시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추가로, 당사는 안전, 보안과 공중위생에 대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더불어, 당사는 Popeyes 메뉴 아이템의 조리법과 서비스에 관해 가르칠 것입니다. 교대근무 관리 기법, 인력 및 재고 관리법, 그리고 고객 접대에 대하여서도 가르칠 것입니다.	6주~8주	관리 훈련 프로그램의 모든 실시 비용 및 숙식, 임금, 출장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귀하나 귀하의 직원에게 발생한 모든 기타 비용은 귀하가 부담할 것입니다. 당사의 일체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모든 개인들은 영어에 능숙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일체의 훈련 참가자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비용으로 통역을 지정할 권한을 지닐 것이며 통역비는 귀하가 신속하게 당사에 환급해야 합니다.	훈련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최초 레스토랑 개장: 매니저 - 개장일로부터 6주 이전 팀원- 개장일로부터 1-2주 이전
Popeyes 아카데미 (의무)	Popeyes 아카데미는 Popeyes 식당 직원들의 훈련을 위한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상의 모든 식당 관련 과정 및 절차는 영상 기반 학습 모듈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2주~4주	Popeyes 아카데미의 연간 수수료는 식당별로 청구됩니다.	(2) 개장 이후 및 추가 레스토랑 개장: 팀원은 45일 동안 직책 교육을 받습니다. 관리자는 모든 팀원 및 관리 교육을 6-8주간 완

				료합니다.
기타 프로그램 (의무/선택)	아울러 당사는 당사의 자 유재량에 따라 실시하기 로 선택하는 추가의 훈련 프로그램(Webinar 등 인 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 트레이닝을 포함하 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을 귀하나 귀하의 직원에 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훈련 프로그램의 참 가는 의무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하여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귀하는 여행 경비(일 단위의 교습장 왕복 교통편을 포함함), 숙식, 유니폼 및 직원 임금 및 상여금과 같은, 훈련과 관련하여 귀하와 귀하의 훈련생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주2)

주 1:

- **직책 별로 레스토랑 교육이 필요합니다:**
 - TM 베이직 (기초) – 모든 레스토랑 직원 (30일 이내 완료)
- **팀원 교육 (베이직 & 한 직책 교육을 총 45일 이내 완료)**
 - 로비 캐셔/드라이브 스루 캐셔/게스트 앰배서더
 - 반죽 프라이 스테이션
 - 준비 스테이션
 - 단축 관리
 - 포장 스테이션
 - 샌드위치 스테이션
- **관리 교육 + 모든 팀 구성원 교육 수강**
 - 교대 관리 교육
 - 매니저 교육 담당
 - 식당 총지배인 교육
 - 직위 및 관리 교육 이외의 추가 교육은 선택 사항입니다.
 - 지역 운영팀의 지시에 따라 특정 강좌 또는 신규 강좌의 재교육을 요구합니다.
 - 한국은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모든 신규 콘텐츠 릴리스는 선택 사항이었습니다(예: DSS, GSC(Guest Service Culture)).

주 2:

- **APAC 지역에 제공한 선택적 교육**
 - 분기별 교육 웹캐스트로서, 당사가 교육 업데이트를 설명하고 향후 플랫폼 또는 콘텐츠 변경에 대해 교육합니다.
- **프로젝트 시작 - 새로운 기능 사용 방법 교육**
 - 훈련 대시보드
 - 제한된 슈퍼 관리자 역할(FZ가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설정)

- 새 콘텐츠 돌아옴
 - ◆ PLK DSS(Dynamic Service System)
 - ◆ PLK 투숙객 서비스 문화(GSC)

3. 교육 · 훈련의 주체

식당을 개업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최소한 3명의 지정된 관리 직원과 운영이사(인원 수는 당사가 결정)가 반드시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당사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Popeyes 관리 훈련 프로그램은 가맹본부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미국에 있는 시설("인증 훈련 시설")에서 식당 운영 훈련의 형태로 실시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 기간 내내, 식당에 당사가 지정한 수의 Popeyes 관리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매니저를 유지하여야 하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매니저 직원이 3인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일체의 매니저나 교대근무 매니저가 귀사의 식당에서 퇴사할 경우, 그들의 고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들을 대체할 자격을 갖춘 후임자를 Popeyes 관리 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시켜야 합니다. 후임 직원은 반드시 다음의 정기 교육 주기에 열리는 Popeyes 관리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이 필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이는 치유 가능한 가맹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치유 가능한 귀하의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그러한 불이행의 본질을 설명한 서면 통지문을 종료 효력일 최소 삼십(30)일 이전에 제공함으로써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귀하가 그러한 불이행을 당사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치유함으로써 계약 종료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불이행이 지정된 기한 내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삼십(30)일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해지하며, 귀하는 위 2개월 동안에도 불이행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국내: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는 국내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국외에서 파파이스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는 해외에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국내: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는 국내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국외에서 파파이스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는 해외에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국내: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는 국내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국외에서 파파이스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는 해외에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첨 1: 2021, 2022, 2023년도 PLK APAC Pte. Ltd.의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국제팀(65) 6511-37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